동원훈련 연기

동원훈련 입영 동원훈련 연기 입영시 준비사항 및 권익보장 지방청 상담 연락처

동원훈련 우대기관

동원훈련 연기

개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 사 후 소집일시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시기: 소집일자 5일전까지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관할지방병무청으로(훈련통지청)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절차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은 병무청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 」 <u>바로가기</u> 에서 신청하시면 처리후 결과를 문자(SMS),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동미참,기본,작계훈련은 예비군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별 처리기준

연기사유	처리기준	구비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 람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 제한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 한 사람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장애인은 행정관서에조회하여 처리 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 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처리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가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사망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 또 는 장례식장 확인
3. 천재지변 등 재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지자체장(읍·면·동장 포함) 발 행 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

. エー 2.52	년계 	
연기사유	처리기준	구비서류
		여부 확인
4. 행방불명 등	전 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 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 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로 직권 처리
5. 출국예정	동원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번째 일요일까지 국외 출국이 예정된 경우 단,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시험 접수를 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시험 접수기간 전 시험 준비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한 사람(단,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1회에 한함)	수능 정기 모의고사(6월, 9월) 접수자 - 훈련소집 시작일 이전 응시자: 성적표 사본(성적발표 이전에는 접수증 사본) - 훈련소집 시작일 이후 응시예정자: 접수증 사본학원 개원: 훈련소집 시작일 3개월 이내 학원 재원(수강) 확인서 사본 등
7. 기타 부득이한 사 유	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 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 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 된 경우에 연기처리 하되,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1차,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 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단계 응시까지 연기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 하는 시험은 동일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내인 경우에만 연기운전면허ㆍ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 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응시자와 교양분야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교양분야자격시험 등시자는 연기 제외*교양분야자격시험 등시가는 연기 제외*교양분야자격시험 등시가는 연기 제외*교양분야자격시험 등시하는 시험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일자가 훈련 기간과 중복된 사람이나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응시한 사람만 연기 2)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	

£ 2:32	인계	
연기사유	처리기준	구비서류
	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다만,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는 시험이 있는 해당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1)과 2)가 중복될 경우 2) 적용	
	나.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 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 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1) 5급 공채시험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 지	O U 경사로 또나 원권로 됩니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2) 채용·승진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연기처리 3) 1 · 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단계 응시까지 연기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다.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기술분야 자격취득 또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교습 과 정이 1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 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 연기처리 하되, 예비 군 편성기간을 통틀어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C 부 확인증서
	라.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수강 등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 기 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일은 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수강 일자 또는 학교 시험응 시 일자와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응시는 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시험일 은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재학여부 및 시험 일정 확인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 증에 필요한 서류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 증에 필요한 서류
	마. 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국제규모나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 람으로서 대회참가를 위한 훈련일부터 대회종료 시 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대회참 가 접수일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 과 중복된 경우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 도 단위 이상 단체(사실확인)
	바.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예식장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획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 · 후 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인(주민등록·가족관계기록사형에 관한 증명서 등 포함) 배우자 출산의 경우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주민등록 포함) 휴직증명서

연기사유	처리기준	구비서류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21일 전 · 후와 중 복된 경우(입영일 21일전 출산, 유산 포함) 육아휴직자(훈련기간이 휴직기간과 중복된 때)	
	사. 주요업무 수행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이 경우 '1'과 '2'에 대한 연기처리는 공공기관, 공·사 단체(개인사업자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 1)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 제한) 2)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3)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4) 주요회의 참석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 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요업 무수행 확인서('1'과 '2'의 경우 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및 사 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의 경우 문서에 의거 처리 가능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처리 교육기관(교육명령 확인) 주최기관 또는 단체(사실확인)
	아. 저소득층 생계보장 하루라도 결근 시 실직우려자(계약직, 시간제근무자 등)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13세 미만 자녀만 있는 부자(父子)가정으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경우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고용주 · 사업주(재직 여부) 주민등록표 등 세대 구성원 확 인 처리 그 밖에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 명)서
	자. 농·어업종사 후계 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 관계 확인 처리
	차. 재판 출석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출석 요구서 또는 사실관계 확 인 처리
	카. 재감 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을 경 우	경찰관서 · 교도소 등에 조회하 여 직권 처리
	타. 대체역 편입신청 소집일자가 대체역 편입 접수일부터 편입 결정일까 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대체역 편입신청 통보 명단으로 직권 처리
	파.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심사대상자로 심사 전 병 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선발부대에서 발급한 군 동원업 체 필수요원 심사확인(증명서) 서
	ı	

<u>동원훈련 지방청 담당연락처 안내</u>

※ 동원훈련 문의(연기, 불참, 교통편 안내 등)은 위의 관할지방병무청으로 문의